M - 153 - 2012

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

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요

o 작성자: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교수

o 제·개정 경과

- 2012.11 기계분야의 제정지침으로 선정

- 2012.11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.11 총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HSE Woodworking sheet No.2: Safe stacking of sawn timber and board materials
- HSL Research report ME/98/21: Banding of sawn timber
- HSL Research report ME/99/25: Stability of sawn timber
-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"제6장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 방지"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 "화물취급 작업 등"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 월 29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153 - 2012

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제6장 제1절의 "화물취급 작업 등"에 의하여 목재 산업에 있어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 또는 하역 시 안전과 안전한 적재 장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저장장소에서 안전한 적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량 위의 적재 또는 가공 전 둥근 목재의 적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받침대(Bearer)" 라 함은 적재상자를 지지하고 지게차 등으로 목재판 상 자를 적재하거나 하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면을 가진 목재로 된 막대 기를 말한다.
 - (나) "전도지점(Tipping point)" 이라 함은 받침대 바깥단부가 적재상자와 접촉하는 점을 말한다.
 - (다) "전도지선(Tipping line)" 이라 함은 받침대와 적재상자의 전도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하며 전도지선 너비(지지너비)가 클수록 적재상자는 안전하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

M - 153 - 2012

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 적재의 안전성을 좌우 하는 요인

4.1 적재 장소의 조건

- (1) 가공목재 및 판재를 적재하는 장소는 고르고 평평하여야 하며 기울기는 2°이내가 되도록 한다. 가능하면 적재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설을 하도록 한다.
- (2) 적재장소는 적재하중과 운반차량 또는 기계의 무게를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비 또는 눈 등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설비와 배수시설을 갖도록 한다.
- (3) 적재장소에서 불안전한 적재를 야기하는 폐목재 또는 사용치 않는 받침대 등 장애물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.
- (4) 강풍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옥외 적재는 목재판 적재상자의 단면이 작은 부분이 주 풍향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강풍 후에는 옥외적재상태를 점 검하고 보호막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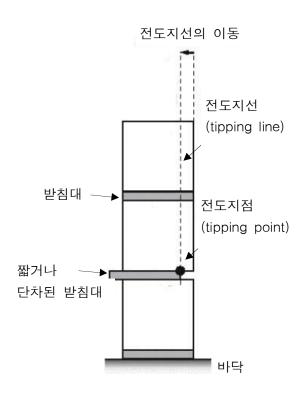
4.2 받침대

받침대(Bearer)는 적재상자를 지지하면서 지게차로 목재판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지면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- (1) 받침대는 곧고 길이와 단면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면은 정사각 형이 바람직하다.
- (2) 받침대 길이는 목재판 적재상자의 너비와 같도록 한다. 너무 길어 튀어나올 경우 적재물에 오르는데 사용할 위험이 있고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칠 위험도 있으며 또한 짧거나 단차가 있으면 상부의 적재상자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다.

M - 153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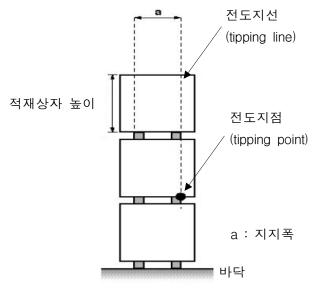
- (3) 받침대는 썩거나 갈라지는 등 결함이 있으면 제거하고 기후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재질로 만들도록 한다.
- (4) 받침대는 지지하는 적재상자의 판재를 기울게 하거나 처지는 것을 방지하 도록 정확히 위치시키도록 한다. 아래 [그림 1]은 짧거나 정위치를 벗어나 단차가 진 받침대는 적재상자의 전도지선(Tipping line)이 상자단부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적재상자의 일부가 지지를 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.



[그림 1] 짧은 받침에 의한 전도지점과 전도지선의 이동

M - 153 - 2012

(5) 받침대가 적재상자의 길이 방향으로 좁게 놓이게 되면 [그림 2]와 같이 적재상자의 지지너비가 받침대의 바깥 단부로 되어 적재는 불안정하게 된다.



[그림 2] 지지폭의 변화

4.3 적재 상자의 띠묶기(Banding)

- (1) 묶기 전에 가공판재가 주위 저장조건에 따라 팽창할 것인지 수축할 것인지 고려하도록 한다. 수분을 많이 함유한 판재는 수축하여 묶음 띠(Band)가 느슨해져 다시 묶어야 할 경우가 있다.
- (2) 묶음 띠의 재료는 묶음 띠가 받게 될 부하조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한다. 예로서 12 mm폭 폴리에틸렌 묶음 띠는 단면이 0.5 m²이상이고무게가 400 kg이상의 판재상자 묶음 띠로서 부적합하며 대신에 폴리에스테르 또는 강철 띠가 사용되어야 한다.
- (3) 판재상자의 묶음 띠는 빈틈이 없이 단단히 묶어 고정하도록 한다.
- (4) 띠묶기를 할 때 모서리의 막대 컬럼과 최대한 가까이서 상자 단면과 평행하게 묶도록 한다. 또한 묶음 띠의 죔쇠(Fastener)는 띠재료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.

M - 153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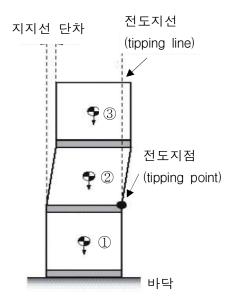
- (5) 묶음 띠를 제거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한다. 탱탱하게 장력이 있는 강철띠를 자를 때에는 안전 절단기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(6) 띠묶기 후 잘못된 묶음이 있는지 파악하여 느슨한 묶음이나 과도한 장력으로 묶여 포장상자 형태를 변형시키는지를 점검하도록 한다.

4.4 포장상자의 형상과 특성

가공판재의 각 단위포장 상자는 적재의 일부분을 구성하므로 단위포장이 좋아 야 적재를 잘 할 수 있다.

- (1) 포장상자 내 목재는 가능한 한 동일단면적과 길이를 갖는 것들로 하고 목 재가 상자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.
- (2) 정사각형이 아닌 상자 또는 마름모 꼴 상자는 적재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주며 묶음 띠에 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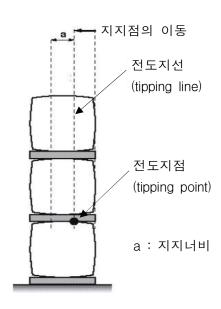
[그림 3]은 마름모꼴 포장상자가 그 위에 있는 적재상자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(① -> ② -> ③)을 보여준다.



[그림 3] 마름모형의 포장상자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

M - 153 - 2012

(3) 포장상자가 볼(Ball)형태나 롤(Roll)형태로 된 경우 지지끝선(Tipping line) 이 안쪽으로 이동하여 포장상자의 지지너비를 감소시켜 적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. [그림 4]는 볼형태의 포장상자를 적재할 경우 포장 상자의 폭 일부분만 지지되고 있어 불안정한 적재를 보여주고 있다.



[그림 4] 볼(Ball)형태의 포장상자 적재 시 불안정성

- (4) 부분적 파손을 포함하여 파손된 포장상자는 적재하지 말고 재포장하도록 한다. 적재상태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상자를 제거하고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.
- (5) 포장상자의 상부면은 수직적재가 되도록 레벨을 유지해야 한다. 포장상자 상부면의 받침대는 평평하고 포장상자 단부에 위치시켜 안정적으로 위 상 자를 지지하여야 한다.

4.5 적재높이와 적재방법

- (1) 옥내에 포장상자를 적재하는 경우 적재 최대 높이는 포장상자의 짧은 폭의 4배 이하(비율 4:1)로 한다. 옥외적재의 경우 적재상자 높이는 바람의 영향 을 받으므로 3:1 이하로 하도록 한다.
- (2) 실제 적재높이를 결정할 때는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 예를

M - 153 - 2012

들면 이동차량에 의해 적재물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, 적재기울기가 2°이상인 경우 또는, 옥외에서 2:1 이내로 하도록 한다. 상기 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비 또는 바람막이를 한 경우에는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.

(3) 짧거나 정위치를 벗어난 받침대와 볼 형태 또는 롤 형태 포장물의 경우 지지되는 적재너비가 보이는 것과 달리 작으므로 적재 높이를 감소시켜야 한다.

5 안전 작업

5.1 포장상자 내리기

- (1) 적재된 포장상자를 내리기 전에 불안정한 적재 여부, 묶음 띠의 파손여부, 받침대 상태, 포장상자가 볼형태로 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.
- (2) 적재된 포장상자는 하나씩 내려 동일한 레벨을 갖는 적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 작업장소가 지상이고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포장상자를 해체하여 개별 가 공목재를 빼내지 않도록 한다.
- (3) 적재의 최상부에 접근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가진 이동형 차량 또는 안전이 확보된 사다리, 안전작업대가 구비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도록 한다.
- (4) 적재상부에서 포장의 해체 등 직접적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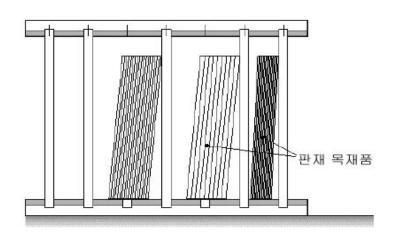
5.2 가공목재 및 판재 쌓기

- (1) 적재하는 포장상자의 무게중심은 일직선상에 오게 하며 상자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.
- (2) 적재 전에 포장상자의 형상과 크기를 고려하여 작고 가벼운 상자는 크고 무거운 상자 위에 적치하도록 한다.
- (3) 적재 시에는 다른 적재상자에 지지되거나 기대게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

M - 153 - 2012

다.

- (4) 지게차의 포크가 화물의 폭보다 길면 들어 올릴 때 뒤에 있는 상자를 밀쳐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장소에 작업자 외의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하 도록 한다.
- (5) 창틀이나 문틀같이 평평한 판재의 목재품들은 평평한 표면에 뉘여서 적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적절한 파레트(Pallet)를 사용하거나 전용 적재선반을 이용하도록 한다.
- (6) 판재의 목재품을 세울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끝에 적절한 지지대를 세워 야 한다. 흔히 저장장소로 운반하기 전에 임시 버팀목에 기대세울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표시하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.
- (7) 판재 목재품을 저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[그림 5]와 같이 중간에 이동형 칸을 만들어서 판재를 세워 적재하여 한 판재를 뽑아 낼 때 옆방향으로 판재의 쓰러짐을 막도록 한다.



[그림 5] 이동형 중간 칸막이를 사용한 적재

(8) 적재선반은 바닥에 견고히 고정하고 최고적재중량을 표시하여 과적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.

M - 153 - 2012

6 출입자의 보호

적재장소에 방문자의 출입이 예상될 때에는 출입 허가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 하도록 울타리를 쳐야하며 가급적 방문자들은 적재장소를 통과하지 않고 만남 장소로 가도록 안전통로의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7 적재장소의 관리와 배치(Layout)

- (1) 위험성평가를 할 때에는 지게차와 차량 등이 적재장소 주위 및 안에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고려하도록 한다.
- (2) 적재장소는 보행자와 차량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하고 필요 시적재장소 주위에 반사거울을 설치하여 차량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.
- (3) 보행자는 차량통행로와 분리된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도(75럭스 이상)의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.
- (4)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속도제한을 준수하도록 한다.
- (5) 차량 통행로는 적재된 차량무게를 충분히 견디도록 건설하고 운행 시 하중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바로 복구하도록 한다.
- (6) 차량후면의 제한된 시야를 보완하여 후진 시 경고음을 울리도록 한다.

8 개인보호구 착용

작업자들은 안전모, 안전장갑,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서의 옥외작업에는 쉽게 눈에 띄도록 반사띠를 갖춘 복장을 하도록 한다.